

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2. 3.(수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2010. 3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심사계획에 관한 건 (2010-05-018)

○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한국위치정보(주)가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재할당 대가 및 심사계획을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재할당 대가

- (재할당 대가 규모) 약 28.3억원
·예상 매출액 기준 18.9억원(주파수 재할당시에 일시 납부)
+
실제 매출액 기준 9.4억원(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)

< 할당대가 산정식(전파법시행령 별표3) >

주파수 할당대가 =

①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

+

②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

[예상 매출액 * x(2%) * 전파특성계수(1) * 주파수 할당률(1)]

[실제 매출액 * y(1%)]

- ※ 예상 매출액은 사업자 전망치, 국내 동일기술 사용 해외국가의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
- ※ 전파특성계수는 300MHz=1 적용, 주파수 할당률은 1/사업자수(1개)=1 적용
- ※ x, y값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 의견에 따라 x=2, y=1 적용

- (「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제정) x·y값, 전파특성 계수,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

② 심사 기준 및 심사 계획

가. 심사 기준

- (심사 사항)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, 재정적 능력, 기술적 능력,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,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(전파법 제11조, 제12조)
- (심사 항목 구성 및 배점) 심사항목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3개 항목으로 통합하되, 전파자원이용의 효율성 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으로 구성

- (재할당 여부 결정) 심사결과,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재할당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할당 거부 또는 조건부 재할당을 방통위에서 의결

나. 심사계획

- (심사위원 선정) 정보통신, 경영, 기술 및 회계 분야 전문가를 해당 학회,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그중 9명 내외의 심사위원 선정
- (심사시기) '10. 2월중 실시
- (평가방법)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
 - 필요시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 심사위원과 신청 법인 간의 질의·응답 기회를 부여

2) 2010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건 (2010-05-019)

- o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통신 정책 개발과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함

< 2010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	주요 과제명	'09 예산	'10 예산	담당 부서
일반회계 (1,622)	o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	400	400	통신정책기획과
	o 방송통신시장 환경 조사 분석	776	732	시장조사과
	o 공정경쟁 상황평가 연구	-	100	융합정책과
	o 전파연구	430	390	전파연구소
방송발전기 금 (6,061)	o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	4,500	5,200	
	- 정책연구 용역	3,500	3,000	정책총괄과
	- 디지털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	1,000	1,000	융합정책과
	- 방송 정책연구	-	1,200	방송정책기획과
	o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촉진 정책연구	270	260	국제협력담당관
	o 방송평가기반 조성사업	-	601	편성평가정책과
정보통신 진흥기금 (9,059)	o 방송통신 정책연구	9,190	9,059	
	- 통신서비스 정책연구	3,000	2,779	통신정책기획과
	- 전파방송 정책연구	1,600	1,482	전파기획과
	- 방송통신시장 사후규제방안 연구	2,050	1,899	조사기획총괄과
	- 네트워크 정책연구	1,260	1,167	네트워크기획과
	- 방통융합 미래전략체계 및 동향분석 연구	1,280	1,732	융합정책과 등 4개과
합 계		15,566	16,742	

사. 보고사항

1) 「800/900MHz 및 2.1GHz 주파수 할당계획」에 관한 사항

○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800/900MHz 및 2.1GHz 주파수 할당계획을 보고받고, 승인 요건을 부여하여 3G이상 기술방식에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결정한 후, 보고를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할당대상 주파수

- 800/900MHz대역 : 839~849MHz(10MHz)/884~894MHz(10MHz)
905~915MHz(10MHz)/950~960MHz(10MHz)
- 2.1GHz대역 : 1920~1940MHz(20MHz)/2110~2130MHz(20MHz) 중 각 10MHz

② 할당에 관한 사항

할당대역	사업자당 할당대역폭	할당시기	이용기간
800/900MHz	20MHz	2011. 7. 1	10년
2.1GHz		절차완료 후 즉시	기존 3G 잔여기간 ('16. 12. 3까지 약 7년)

③ 기술방식

- 3G이상의 기술방식(IMT-2000 또는 IMT-Advanced)으로 하되, 할당 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 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(현재 CDMA/WCDMA → OFDMA 등)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 기술방식으로만 활용

※ 승인요건 : (i) WiBro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 사항('09. 10. 30)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시

(ii)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

④ 주파수할당 신청자격

- 800/900MHz대역은 800MHz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

⑤ 땅 구축의무 및 제재 조치

- **(땅 구축의무)**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, 3년이내 15%, 5년이내 30%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“주파수이용계획서”에 제시토록 하고

< 기지국 설치기준 >

구분	기준 기지국수	3년이내 15%이상	5년이내 30%이상
800/900MHz대역	5,400국	810국	1,620국
2.1GHz대역	7,400국	1,110국	2,220국

·신청법인이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

- **(제재조치)**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,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과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예정

⑥ 주파수대역의 배정방법

- 800/900MHz대역은 대역구분 없이 하나의 신청대역으로 하며,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함.
단, 동점의 경우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함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5)